

SAg. d. 6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
토론회

- 일시 : 1998년 10월 26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주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상 가나다순)

▪▪▪ 프 르 그 램 ▪▪▪

사회 : 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인사말 ▣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주제발제 ▣

• 발제 1.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기구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 발제 2.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기구

-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중심으로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토론 ▣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장)

박우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차별개선조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용환*)

[발제 1]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한일장신태 교수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인권기구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

신예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한일장신태 교수, 여성복지학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인권기구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한일장신대 교수, 여성복지학)

1.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1) 여성인권: 차별과 폭력의 철폐

여성인권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전에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루어졌다. 즉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중요한 국제인권규약 등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 있어서 남녀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성인권에 대한 항목을 특별히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남녀평등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아주 중요한 국제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인권이라는 용어가 독자적으로 쓰여진 것은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중심으로해서였다.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인권이라는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었다. 1995년의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12개 분야의 하나로 여성인권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은 여성(과 여자아동)의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 중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한 불가분의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of the girl-child are an inalienable, integral and indivisible part of universal human rights.”, para. 18). 즉 여성인권의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핵심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엔나 선언은 이어서 여성인권의 내용으로 차별과 폭력을 기술하고 있다. 여성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 포함 – 여성이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과 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제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행동계획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 은폐된 것인 드러난 것인간에 – 에 대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여성차별 철폐협약을 비준하고, 유보조항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성에 입각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및 착취 –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에서 비롯된 것을 포함 –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계획에서는 공적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적인 전통적 관습, 문화적 편견,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 법 집행에 있어서의 성에 입각한 편견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살인, 조직적 강간, 성노예, 강제임신등 전쟁지역에서의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서의 여성인권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여성인권의 침해자가 국가든 개인이든, 공적인 부문에서든 개인생활에서든 이는 근절되어야 하며, 인종이나 언어, 종족, 문화,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계층등에 따른 요인이나, 원주

민, 이주노동자, 난민등 취약집단여성의 인권이 보다 더 침해되기 쉬운 현실을 명기하고 있다. 여성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모든 인권규약의 이행,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 둘째, 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의 수립과 차별의 철폐, 그리고 셋째로 법률문해의 달성을 들고 있다.

2) 여성폭력의 정의

여성폭력철폐선언의 제1조에서 여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공적 생활에서 발생하든 또는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위해나 고통을 여성에게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성에 기반한 모든 폭력행위 및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제, 또는 자유를 임의로 박탈하는 행위.”

(For the purposes of this Declaration, the term "violence against women" means any act of gender-based violence that results in, or is likely to result in,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harm or suffering to women, including threats of such acts, coercion 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whether occurring in public or in private life.)

여성폭력의 범주로서는 가족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구타, 여자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아내강간, 음핵절제등 여성에게 위해한 전통적 관습, 착취와 관련된 폭력등이다.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은 강간, 성적 학대, 직장이나 학교등에서의 성희롱 및 위협,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어디서 발생하든지 국가에 의해 자

행되거나 묵인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성폭력의 종류가 여기에 열거한 항목의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2. 한국여성의 인권현실 : 여성에 대한 폭력

1) 가족내 폭력

한국에서 발생하는 가족내의 여성폭력은 아내구타, 딸을 포함한 여자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 성감별후의 여아낙태, 결혼흔수와 관련 한 학대등이 있다. 아내구타는 각종 조사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한번이라도 맞거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조사대상 여성의 42%~6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동반하는 반복적, 습관적, 상습적 구타의 피해자는 조사대상여성의 1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여성 2명중 1명꼴로 남편에게 매맞는 경험을 하며, 10명중 1명은 심각한 구타를 겪고 있다고 하겠다. 가정폭력방지법이 발효되기 이전인 1997년 말과 1998년 초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는 구타 때문에 외국(캐나다와 호주)으로 피신하여 망명을 요청한 사례가 2건 접수되어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상습구타의 피해자인 경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당방위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1년에 3~4건씩 발생하고 있다. 구타후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일반 여성의 경우 아내강간은 기혼자의 67.3%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근친 여자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은 어린이 성폭력 발생비율 6.5% 가운데 32.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상담기관에 접수되는 사례에서도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전체의 30%에 이

르며, 이중 가족 및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 어린이 성폭력의 30.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족내에서의 어린이 성폭력은 심각하다.

한국에서의 낙태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행해지지만 (가입기간 여성의 49%가 낙태경험), 이중에서도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낙태는 전통적 관습에 의한 여성폭력이다. 성감별후의 여아낙태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남녀의 성비불균형을 들 수 있다. 자연적인 남녀비율이 106 : 100인데 비하여, 1995년의 성비는 113.4 : 100이다. 넷째 아이 출산시의 성비는 214 : 100으로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흔수로 인한 가족내의 갈등과 폭력도 인도의 지참금으로 인한 폭력보다는 덜 하지만 뿐만 깊은 가족내 여성폭력으로 존재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신적 폭력이 보다 많다.

2) 사회에서의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인권문제이다. 여성에 대한 강간범죄 발생율은 조사에서 응답여성의 7.7%, 강간미수는 14.1%, 심한 성추행은 23.7%의 발생율이 보고되고 있다. 가벼운 성추행은 여성의 대다수가 경험하는 폭력으로 조사대상 여성의 76.4%가 경험하였고, 성기노출 74.5%, 성희롱 48.6%, 음란전화 46.3%로 경험비율이 높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은 일반여성에 대한 것보다 훨씬 높아서 사무직 여성의 87%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에서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가벼운 추행의 경우(선생님이 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짐) 19.0%, 심한 추행의 경우(선생님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함) 1.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주

번 친구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비율은 30.7%와 3.7%로 각각 보고되고 있어 학교 성폭력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희롱의 유형으로서 정보화사회에서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성폭력의 문제와, 쪽사랑 애인이나 유명인을 집요하게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도 인권침해로서 포함된다.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매춘업소에서 탈출한 여성들을 통해 그 실상의 일부가 밝혀지기도 한다. 여성을 유인한 후에 성폭행하고 매춘업소에 팔아넘겨 감시받는 상태에서 매춘행위를 하고 화대를 빼앗기는 식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청소년들의 향락업소로의 유인과 매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정신박약아동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그러한 시설에 가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데, 시설장이나 직원, 교사등 보호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3) 국가에 의한 폭력

국가에 의한 폭력은 크게 공권력에 의한 폭력, 위안부문제등 전쟁시 군대에 의한 폭력,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에 의한 범죄등이 있다.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회통, 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이 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6년 8월 한총련의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이 집단적으로 한총련 여대생들을 회통, 추행한 사건이 있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여성피의자에게 성적 농담이나 추행을 하기도 한다.

공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은 피의자에게 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

받는 여성피해자에게도 일어난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오히려 피해여성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또 다시 강간당하는 것과 같은 성적, 정신적 폭력을 겪는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불법주택에 대한 철거집행시 이를 막으려는 빈민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일도 발생한다.

전쟁시 군대에 의한 폭력으로는 멀게는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인 '위안부'제도, 그리고 가깝게는 1980년 광주민주항쟁시 여성의 겪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요즈음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5·18피해에 대한 보상자 명단에 성폭력피해자는 포함이 안되었고, 이는 앞으로 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폭력도 우리가 인권침해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1992년 10월에 발생했던 윤금이씨 살해 사건 이후에도 미군에 의한 여성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평균 하루 2건씩 발생하고 있다. 성별통계는 없지만 미군범죄의 피해자중 여성들도 많이 포함되며, 특히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거나 미군과 동거하는 기지촌 여성들이 폭력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4) 취약집단 여성에 대한 폭력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 외국인여성노동자, 매춘 여성등은 특히 더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의 차별과 시설에서의 폭력이외에 가족에 의해서도 학대받기 쉽다. 손님이 왔을 때 방에 감금해 놓는다든지, 외출을 전혀 안시켜준다든지 하는 것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인종적으로, 성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강간이나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의 경우 구타를 당하여 피난처를 이용하는 경우도 97년에 3건 있었다. 매춘여성의 경우에는 강간을 당하여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여성인권과 국가인권기구

1) 여성폭력과 관련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현법역시⁵ 여성폭력의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 설립
1. 인천법. →(전권)국별치법
2. 독립성보장
3. 실효성
4. 민간당체와의 관계
될 **국가인권기구는** 무엇보다도 가정, 사회, 국가의 전 부문에서 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기준을 설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경찰, 검찰, 군대 등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다수인 보호시설, 가정 등 모든 곳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에서 여성인권의 정책과 기준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성인권의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2) 정책과 기준을 설립하는 일과 병행하여 여성인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폭력사건을 직접 다루게 되는 경찰, 검찰, 사법부, 관련부처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여성폭력을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전문가 집단, 즉 의사, 약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소 직원 등에게 여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에게는 여성인권교육을,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지키고 향유해야 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여성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 접수, 조사 및 처리

여성인권사안 중 폭력에 대한 처리는 성폭력에 관한 범죄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그

리고 가정폭력의 경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이러한 법률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성희롱이나, 앞에서 예시한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의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사안들이 우선적으로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담당자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국가인권기구와 여성특별위원회와의 관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여성특별위원회는 현재 준사법적 권한과 기능, 인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다른 어느 부처보다 여성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성피해자의 진정에 대해서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권사안은 일차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다루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인권사안이 완전히 여성특별위원회로 이관되어 국가인권기구의 전체 인권침해사안과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어지게 될 모든 인권문제에서 여성인권은 한 중요한 부분이다. 전체 인권정책이나 교육에서 여성인권이 비중있게 다루어 지기 위해서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인권침해사안들이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어지는 사안들과 같이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통계에 여성인권사안도 포함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인권이 부차적인 인권문제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에게 보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에서도 여성인권사안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 김엘림, 인권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1998. 10.

김혜선,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한국여성의전
화,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1997.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_____,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사, 199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위원회 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Lockwood et. al.(e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f Women:
Instruments of Change, American Bar Association, 1998.
CEDAW,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ourth periodic report of
States parties, Republic of Korea (CEDAW/C/KOR/4), 30
March 1998.

[발제 2]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인권기구

-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중심으로 -

정 강 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인권기구

도우미법 제정을 위한 공동체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Joint Statement
Status parties, Republic of Korea (CDAW), March
March 1998

자본금

제10공동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인권기구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중심으로-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I. UN의 여성인권을 위한 조치

1. UN의 여성정책 일지

- 1945년 국제연합헌장
- 1948년 세계인권선언
- 1966년 국제인권선언
- 1967년 여성차별철폐선언
- 1975년 세계여성행동 선언 (세계여성의해)
-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 1980년 유엔여성10년행동계획
- 1985년 2천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
-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
-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및 북경 행동강령

- 1945년 채택된 UN헌장에는 인종, 언어, 종교, 성에 의한 차별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명시하고 있음.

2. UN의 여성차별정의

- 남녀평등에 관한 UN 활동의 대부분은 여성지위위원회 ('46년 설치)에서 취급하고 있음.
-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에 관한 제안, 권고, 보고를 UN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여성지위위원회가 마련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1979년 UN 총회에서 채택, 1981년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억제를 철폐함으로써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사실상의 평등을 촉구함.
 - 우리나라는 협약당사국으로 지금까지 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음.

II.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기구의 필요성

- 21세기 노동시장(취업 및 실업구조를 중심으로 본)의 특징을 대량 실업, 장기실업, 불완전 고용확대, 일자리 감소등을 볼 수 있음.
-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채용, 배치, 승진, 훈련, 임금, 해고, 복리 후생, 고용계약 및 고용조건상의 직·간접 차별이 행해지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도 이러한 차별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경제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여성실업의 특징을 보면 20대 (-15.4%), 사무직 (-19.1%), 상용고(-19.7%), 자영업주(-13.4%)의 취업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차별적 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빈곤화는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임.
 -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62.7%가 여성
 - 여성무급가족종사자는 1,880천 명
 - 여성가구주는 2,659천 명 (16.8%)으로 이중 66.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감소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대응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음.
 - 89년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율 감소는 더욱 두드러짐. (89년 53만명을 정점으로 95년 36만으로 17만명이 줄어듬)
 - IMF 구제금융 이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원감축의 주대상이 여성으로 되고 있는 성차별적 고용조정에 노동조합의 효과적 대응이 부족함. (고용조정 인선기준의 합리성 결여)

- 간접차별 금지조치가 없는 등 차별금지 내용이 협소함.
 -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노동자에게 불리한 작용을 하는 조치들 즉, 인사제도, 고용형태를 도입하여 남녀 직종분리와 임금차별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차별로 규제하여야 함.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필요함.

III. 한국의 여성의 인권현실 : 고용상의 성차별

① 고용상의 성차별은 고용주가 고용하는 여성과 남성 간에 발생하는 차별이다.

-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차별의 정의를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모집채용에서 승진·정년에 이르는 노동의 전과정에 걸쳐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1. 여성고용현실

1) 모집·채용 차별

- 여성에게 기회의 원천봉쇄 (xx직 남자 0명 모집, 병역필 남자에 한함)
- 모집채용시 성별직종분리는 승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민주노총 산하 여성조합의 39.8%가 모집채용상의 가장 큰 불만으로 성별직종분리를 지적하고 있음. '97년 조사보고서)
- 여성에게만 연령, 혼인여부등의 조건 제시
- 동일자격 (학력 및 경력)임에도 직급차별, 고용형태차별
-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제시 (신장, 체중, 안경 착용여부등의 신체적 조건 제시)

2) 임금차별

-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1.5%, 여성을 이유로하는 불합리한 차별임금제도의 금지가 선행되어야 함
- 시간제, 파견직, 계약직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동일조건의 정

규직 임금의 60% 수준이며, 복지혜택배제, 고용불안의 문제

-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종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 생활보조적 임금, 교육자금 기타 복리후생비 지급에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보다 조건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

3) 교육차별

- 여성은 직업의식이 낮고, 근속년수가 짧으며, 장기근속을 하지 않으며, 단순반복 업무에 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경력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에서 제외하거나, 성별 교육과정,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

4) 배치차별

- 일정직무에 여성노동자를 전적으로 배치 혹은 배제하거나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음.
- 남성은 기획업무, 여성은 보조업무
-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
- 코스별 관리제도를 도입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

5) 승진차별

- 여성에게는 승진기회를 완전 박탈하거나,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절차 적용, 일정직급 이상의 승진 규제, 여성직급의 다단계화로 승진소요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6) 정년차별

- 동일직종에서 남녀간에 정년을 달리하거나 여성집중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추고 있음.

7) 해고차별

- 결혼·임신·출산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정계사유 절차에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고 있음.

2. IMF 구제금융 이후 여성고용현실

1) 여성우선해고

- 업무평가·직무수행능력에 관계없이 여성이 가계보조적이라는 이유로 우선해고 되었음.
 - 여성실직이유를 보면 기혼여성(26.1%), 장기근속(19.3%), 생계보조자(18.5%), 비정규직(13.5%), 사내커플(7.6%), 맞벌이부부(4.2%) 순으로 나타남.(98.9~10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실태조사)

2) 성차별로 직장 포기

- 성차별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매우많다 20.3%, 조금있다 47.14%) 여성이기 때문에 퇴직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59.2%) 있음.

3) 여성차별심화

- 여성차별은 심화되고 있으며(56.3%), 그 내용을 보면 결혼임신퇴직, 승진차별심화, 잡무증가, 배치차별, 성차별적 해고, 비정규직 증가, 비인격적 대우, 모성보호후퇴, 폭언·폭력·성희롱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여성차별은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낮을수록 성차별적 해고나 승진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남

4) 근로조건 악화

- 경제위기 이후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고(61.7%), 승진이 더 어려워졌으며(58.2%), 생리휴가(48.8%), 출산휴가(52.5%), 육아휴직(51.3%)

사용이 어려워짐.

5) 비정규직화 → 심약 : 노동시장의 고용평등의 양강화 모니터링.

-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금융, 판매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고용조정이 수량적 조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신규채용금지,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등임.
 - 27개 은행의 비정규직은 17.6%(17,873명)로 시간제(7,466명), 용역직(8,349명), 계약직(1,778명)
 - 시간제중 78.3% 여성노동자 (노동부 파트타임 실태조사)
 - 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시간제·파견직·계약직으로 전환 재고용하고 있음.
 - 갖 출입한 신규인력의 비정규직화가 확산되고 있음.

IV. 차별문제전담 행정기구

- 차별문제를 다루는 행정기구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성차별개선위원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음.
- 고용상의 성차별문제를 제외한 여성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원회가 다루어야 함.
- 여성차별 문제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조직을 재정리하여야 함.
-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속성이 떨어지고 조정안의 강제력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90-'96 9건처리)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성차별개선위원회)에서 고용상의 성차별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
- (단,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고용평등위원회의 권

한을 강화하여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여성·노동계의 의견조정이 필요함)

- 근로감독관의 부족(지방근로감독관 711명, 1인당 284개 사업장의 8,920명 노동자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이를 따를 수 있는 전문성,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행정기관이 없는 점은 고려한 업무협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도론문]

國民人權委員會의 性格과 權限등에 관한 檢討

法務部

國民人權委員會의 性格과 權限等에 관한

檢討

法務部

1. 국민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 일부에서의 주장> (수사·재판)의 양 기구에서 인권을 이어 다루고 있다.

- 인권법은 헌법적 법률이고,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등 기존의 헌법기관을 감시·견인하는 것이므로 그 위상은 헌법기관들 보다 실질적으로 상위에 있어야 함
-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면 그 위상 저하로 기존 국가기관을 감시하는데 한계

< 검토 >

▣ 인권위의 보편적 성격과 위상

-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대체기구가 아닌 보충기구임
 - 원래 인권위는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 즉 '틈새(shortcomings)'를 보충하기 위한 기구임.
 - 다시 말해, 인권보장에 관한 제1차적, 최종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이를 감시·보충하는 책임이 인권위에 있는 것임

* 국가 인권보장기능의 '틈새'의 예 : ① 수사·형집행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②정신병원등 다수인 보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그 발생가능성이 높은데도 국가기관에서의 적발이 어려우며 ③차별행위는 보통은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수사대상이 아님 (단,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차별은 처벌규정 있음 :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인권위의 위상은 정부기관 등을 감시·보충하는 기구이므로 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하며 정부기관과의 단선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인권위의 설립형태가 법인이라고 하여 그 위상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외국 인권위의 경우

- 외국 인권위는 모두 기능상 기존 국가기관의 보충기구임
 - 영국(인종평등위), 캐나다, 뉴질랜드 : 인종·성별·종교 등에 기한 차별행위를 조사, 구제함(권고적 권한)
 -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南阿共 :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권한이 없고, 조정·관계기관에 이송·고발등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
- 외국 인권위의 독립성
 - 설립형태가 국가기구이든 특수법인이든 불문하고 독립성 보장됨
- 외국 인권위의 설립근거

▲ 국가기구형

- 필리핀 : 헌법
- 캐나다, 인도 : 법률
- 인도네시아 : 대통령 명령

▲ 특수법인형

- 영국(인종평등위), 호주, 뉴질랜드 : 법률
- 南阿共 : 헌법

* 호주, 南阿共의 인권위의 경우 직원들에게는 공무원법이 적용됨

* 南阿共에서 소위 과거사(과거의 대량적 인권침해사건) 청산을 담당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구이나 한시적인 기구이고, 南

阿共에는 이와는 별도의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음

< 참고사항 >

美國과 日本은 人權委가 없고 법무성에서 인권침해사건을 직접조사

- 미국 법무성 민권국에서는 250명의 검사와 300명의 직원이 연방법위반 인권침해행위 조사(고용관련 차별은 EEOC에서 조사)
-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에서는 3명의 검사와 248명의 직원이 법무대신이 위촉하는 14,000명의 인권옹호위원과 협력하여 인권침해행위 조사

▣ 국민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한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南北 대치 등 현재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일본과 같이 법무부의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여기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 그러나,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것임
 -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별도의 인권위 설립)
 - 100대 국정과제(인권법제정 및 인권위 설립)
 -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 인권위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고
- 외국 입법례
 - UN에서 인권위 운영에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인권위에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음
 - 아·태지역 인권위 7개중 가장 최근 설립된 스리랑카의 인권위 ("97.3.17 설립)도 법인체임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권보장의 '틈새'를 감시·보충하고, 정부와 인권단체와의 架橋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는 인권위를 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는 경우의 문제점

< 일부에서의 주장 >

- 인권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기구형태가 바람직
- 법인의 직원이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 검토 >

▣ 우리나라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 公務員 중원과 豫算 부담 가중
 - 정부기구 축소와 공무원 감원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공무원 중원과 예산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음 (국가기구로 할 경우 민간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으며 바자회, 후원의 밤 행사, 서적·비디오 등의 유상출간등이 불가능하여 예산부담이 가중됨)
- 같은 公務員 조직내에서 인권침해를 감시, 적발하는데 한계
 - 동료의식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어려움
 - 관료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입장에서 국가기관을 비판하기가 곤란
- 「감사원」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국가기구의 업무와 중복되어 기존 국가기구의 위축과 업무혼선으로 갈등 야기
 -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어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 「여성특위」는 성차별 개선, 여성의 지위 향상등을 위한 제도개선등 업무를 담당하며,
→ 조사권보여서 국가인권위 보다 우선권 가짐.

- 「국민고충처리위」는 차별에 기한 행정처분을 조사할 수 있음
-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 「고용평등위」 등은 고용 관련 부당해고 및 근로여성에 대한 차별행위 조정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어 人權委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그 기능이 중복됨
→ 관련기구 축소 또는 폐지 불가피, 육상육이라는 비판, 우리 현실상 직역갈등 심화, 국가전체적으로 비효율적
- 검찰, 경찰, 안기부와의 기능중복과 혼선 초래
 - 인권침해, 즉 기본권침해행위는 대부분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 경찰, 안기부와도 기능중복과 업무혼선 초래
 - 이 경우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진 검찰, 경찰, 안기부를 능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될 소지가 있음

▣ 법인이 조사하는 경우의 실효성

-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은 국가기구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과 그 조사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에 달려 있음(뒤의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참조)
- 인권법 시안은 국민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찰등 수사기관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출석불응에 대한 제재(과태료) 규정을 둠

- 南阿共 : 대통령 임명(의회 추천)

3.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 - 인권위원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

< 일부에서의 주장 >

- 민간단체, 노동계 등 각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
- 법무부장관이 이사의 임명제청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인권위가 법무부의 산하기관이 되는 것임

< 검토 >

■ 인권법 시안 내용

- 법무부장관은 일부 이사의 임명제청권만 있을 뿐, 인권위원은 이 사회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인권위원 임명권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국가기구 형태
 - 캐나다 : 총독 임명(법무부장관의 추천)

인권장 여부 → 필리핀 : 대통령 임명

- 인도 : 대통령 임명(수상, 하원의장, 내무장관, 상·하원 야당총재, 상원 부의장 도합 6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 인도는 법무부가 따로 없고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가 법무부 기능을 담당

- 인도네시아 : 대통령 임명 (인권위원들의 추천)

○ 특수법인 형태

- 영국 인종평등위원회 : 법무부장관 임명

- 호주 : 총독 임명(법무부장관 추천)

- 뉴질랜드 : 총독 임명(법무부장관 추천)

■ 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물을 인권위원에 임명하는 방안의 문제점

- ① 이 경우, 인권위원이 실제로 각 단체(자기를 추천해 준 단체)를 대변하게 되므로 인권위 본래기능이 변질되어 정치단체화할 우려가 있고,
- ② 추천위원회에서 각계 대표들간에 나눠먹기식 선임으로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있으며,
- ③ 만일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미흡한 인물이 인권위원들중 다수를 차지할 경우 현실을 간과한 과잉행위로 정부활동의 발목을 잡아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기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 ④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도 민간단체가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입법례가 없음

■ 법무부 시안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선임이사의 제정권을 부여한 이유 (재정도中)

- 법무부 시안에 의하면 당연직 이사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선임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인권위원을 임명제청하여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임명함
- 정부내 인권옹호기능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이므로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인권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사의 임명제청권을 부여한 것임
※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기타 法務에 관한 사무를 掌理한다
- 당연직 이사 4명중 법무부차관 이외 3명은 여성특위 상임위원 및 노동부등 타 부처의 차관이므로 법무부와 관련이 없고, 선임이사 7명에 관하여도 여성계, 노동계, 인권단체등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그 선임제청을 할 것임

- 인권위의 독립성은 정부에게 업무감독권이 있느냐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인데 「국민인권위원회」에는 다른 일반법인과 달리 정부의 업무감독권을 배제하였음(시안 제20조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규정)

* 소비자보호원은 재경부장관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으며(소비자보호법 제49조),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장관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법률구조법 제35조), 인권위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

4.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압수수색)

< 일부에서의 주장 >

- 법무부 시안은 인권위의 조사방법으로 임의조사권만을 인정
-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함

< 검토 >

▣ 헌법 규정으로 인하여 검찰의 산하기구화

-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게됨. 검사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 인권위가 거꾸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인권위가 검사 지휘를 받게 되면 그 독립성이 훼손되어 검찰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 인권위 파견 검사에 의한 강제수사도 인권위가 범죄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상 곤란(형소법 제215조)

▣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인권법 시안은,
 - ▲ 조사의 방법으로서, 진술서 제출등 서면조사권, 당사자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등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現場調查權까지 인정하였으며
 - ▲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등 구금·보호시설에서 위원회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 ▲ 과태료(1,000만원이하) 부과대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②위원회의 자료·물건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③위원회의 현장조사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을 거부·방해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 국가기관의 협력의무로서, 위원회의 자료제출등 요청에 대한 성실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둠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권위의 도덕적 권위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기가 어렵고, 소환 불응시에는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아니할 것임

* 「국민고충처리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할 수 없음에도 업무수행

▣ 강제수사 관련 외국의 입법례

- 국가기구형
 - 캐나다, 인도의 인권위가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음
 - 특수법인형
 - 南阿共의 인권위가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음
- * 이들 영미법계 국가는 영장청구에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 검사는 공소유지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권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가능

5.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주는 문제

< 일부에서의 주장 >

-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상위에 있는 준헌법적기구이므로 인권위에 '시정권고권'이 아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라고 주장
- ※ 「준법서약제」와 같이 정부의 대내외적 위신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되풀이 하여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권을 주라고 주장

< 검토 >

▣ 시정명령의 성격

- 우리나라 법률상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상 민간인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향후 행위중지,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등) 부과
 -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근로자의 원직복귀, 임금지불) 부과
 -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이행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여부 결정됨
-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나 불용시 이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이 인정되는 범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법원의 행정소송 또는 상급관청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등을 할 수 있을 뿐임

▣ 인권위에 시정명령권 부여할 때의 문제점

- 재야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준법서약제도」 폐지문제등 정부의 정책을 인권위에서 결정하게 한다면 인권위가 국가의 최고정책 결정기구화되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보충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됨
- 법률상의 기구에 불과한 인권위가 다른 법률상의 기관뿐 아니라 「감사원」과 같은 헌법상의 기구까지 기속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조직 체계에 일대 변화가 초래됨
- 또한, 인권위가 강제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보유한다면 이는 「제2의 검찰」 겸 「제2의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인데 인권위의 본질과 성격상 그래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입법례도 없음
→ 권력기구화되어 이를 감시하는 제2의 인권위 설치 필요
- 인권위가 인권침해당사자와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인권위의 도덕적 권위등에 손상 우려
- UN총회의 결의안인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도 "인권위는 정부·의회 기타 관계기관에 권고적 차원에서 (on an advisory basis) 의견, 권고, 제안, 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시정명령 관련 외국의 입법례

- 人權委의 결정 자체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음
-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외국 인권위도 그 결정에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나, 인권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아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음
- ※ 캐나다, 뉴질랜드는 인권위가 조정에 실패한 경우, 인권심판소(Human Rights Tribunal 또는 Complaints Review Tribunal)라고 하는 특별법원에 제소하여 차별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차별중지 및 손해배상등의 명령을 구할 수 있고 이 명령은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음. 다만, 이러한 인권심판소는 인권위와는 별개의 기구임

6. 인권위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문제

< 일부에서의 주장 >

-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은 인권위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거나 운영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자치를 보장하여야 하며 인권위의 예산이 특정 정부부처의 예산에 연계되어 서는 아니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법무부가 인권위의 예산을 요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UN 권고안과 배치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침

< 검토 >

- 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UN권고안 과 같이 위원회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거나 운영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임
- 그런데, 우리 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줄 수 없음
- 또한, 위원회의 자치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금은 약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의 국가 경제난으로 위와 같은 거금을 정부에서 출연하기 곤란하고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민간기부금을 합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임
- 인권위원회의 예산을 법무부에서 예산당국에 요구하도록 한 이유는, 법무부가 인권옹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옹호 주무부처이고 예산회계법상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예산은 관련 정부부처의 예산에 포함하여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제25조제3항), 법무부가 인권위의 전체

예산(국가예산과 민간기부금 등 포함)을 편성하려는 것은 아님

<참 고 사 항>

인도, 인도네시아, 南阿共,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인권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없고 정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필리핀의 인권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음

◦ 인권단체지원, 재단법인, 이사회제도 → 삭제강도.

< 조용환 병조사 >

- * 특정 기관과 충돌되거나 중복된다는 시선은 곤란
 - 가능한 많은 참구 만들어 피해자가 선택 가능케 하고 보다 확실하게.
-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매우 강력해야 한다.
- * 지위와 위치의 차이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기관 마련
- * 국가 최고 수준의 제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정치적인 제도 마련의 시급성. 정치적 의지 마련이 필요.
-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 필요.
- 모든 가능한 대안의 검토 필요.
- 마지막 제도권·기득권 등의 조건을 뛰어넘는 것은 맞지 않는다.

1. 인권위 → 미래지향적으로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구제 가능.
 - (*) 병과 제도 바로잡고 교육하는 기능이 강력해야 한다

-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제기능
- 여성 특위 기관 행정조직 속 기관으로 강화 (기능·권한 부여)
 - 기존 행정부처가 법령해석권 등에게 이양
 남녀 평등, 여성 차별, 성희롱에 완전한
 - 특위와 중복사항을 두고 상황별로 활용
 - 특위가 관할한 것 → 인권위 해결.
 - 여성 기관은 여성 인권침해 등.

- * 특위 → 행정기관으로 격상
- (인권위 → 일정 역할 부여)

< 김영임 >